THE HUE HANSHIN

양산 물금 한신더휴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7.11.2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11.30.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2015.04.0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85㎡이하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청약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추첨제』가 적용됩니다. ■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2016.08.1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40%만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 ·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ys-thehue.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 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양산시)은「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양산시)은「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 (총공급금액의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1.30.)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양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 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 · 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고령자와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77A, 84A, 84B 타입의 유니트가 설치 되어 있으며, 59A, 59B, 77B, 84C, 84D 타입은 모형도가 전시되어 있음.
- 2017.11.24.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 공동주택과 – 39360호 (2017.11.29.)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10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3층 ~ 지상 24층 14개동 총 1,04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 특별공급 10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102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30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번호) 및 아파트코드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타입	세대별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최저층 우선 배정 세대	입주 예정 시기
				세대별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포함)	합계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관추천 (일반)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자			
민영주택	2017001603-01	59.9773A	59A	59.9773	18.7646	78.7419	33.0284	111.7703	35.6855	189	18	18	18	5	130	8	2020.11.
	2017001603-02	59.7846B	59B	59.7846	18.8823	78.6669	32.9223	111.5892	35.5708	40	4	4	4	1	27	2	
	2017001603-03	77.9466A	77A	77.9466	23.0270	100.9736	42.9238	143.8974	46.3769	172	17	17	17	5	116	8	
	2017001603-04	77.8399B	77B	77.8399	23.0364	100.8763	42.8651	143.7414	46.3134	92	9	9	9	3	62	4	
	2017001603-05	84.7715A	84A	84.7715	24.6067	109.3782	46.6822	156.0604	50.4376	234	23	23	23	7	158	10	
	2017001603-06	84.6120B	84B	84.6120	24.6100	109.2220	46.5944	155.8164	50.3427	250	25	25	25	7	168	11	
	2017001603-07	84.6033C	84C	84.6033	24.6821	109.2854	46.5896	155.8750	50.3376	24	2	2	2	1	17	1	
	2017001603-08	84.7520D	84D	84.7520	24.6841	109.4361	46.6715	156.1076	50.4260	41	4	4	4	1	28	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주택형	타입	동별 (동,라인별)	공급 세대 수	층구분	해당 세대 수	대지비	건축비	분양가	1차계약금		1회 중도금	2회 중도금	3회 중도금	4회 중도금	5회 중도금	6회 중도금	잔금
									1회	2회							
									계약시	2018.01.26.	2018.04.26.	2018.09.27.	2019.02.26.	2019.07.26.	2019.12.26.	2020.05.26.	입주지정일
59.9773A	59A	102동1,2호 109동1,2호 111동1,2호 113동1,2호	189	1층	5	38,066,631	158,933,369	197,000,000	10,000,000	9,700,000	19,700,000	19,700,000	19,700,000	19,700,000	19,700,000	19,700,000	59,100,000
				2층	8	38,066,631	163,933,369	202,000,000	10,000,000	10,200,000	20,200,000	20,200,000	20,200,000	20,200,000	20,200,000	20,200,000	60,600,000
				3층~4층	16	38,066,631	167,933,369	206,000,000	10,000,000	10,600,000	20,600,000	20,600,000	20,600,000	20,600,000	20,600,000	20,600,000	61,800,000
				5층~9층	40	38,066,631	174,933,369	213,000,000	10,000,000	11,300,000	21,300,000	21,300,000	21,300,000	21,300,000	21,300,000	21,300,000	63,900,000
				10층~20층	88	38,066,631	178,933,369	217,000,000	10,000,000	11,700,000	21,700,000	21,700,000	21,700,000	21,700,000	21,700,000	21,700,000	65,100,000
				21층~24층	32	38,066,631	182,933,369	221,000,000	10,000,000	1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66,300,000
59.7846B	59B	101동1,4호	40	1층	1	37,944,278	159,055,722	197,000,000	10,000,000	9,700,000	19,700,000	19,700,000	19,700,000	19,700,000	19,700,000	19,700,000	59,100,000
				2층	2	37,944,278	164,055,722	202,000,000	10,000,000	10,200,000	20,200,000	20,200,000	20,200,000	20,200,000	20,200,000	20,200,000	60,600,000
				3층~4층	4	37,944,278	168,055,722	206,000,000	10,000,000	10,600,000	20,600,000	20,600,000	20,600,000	20,600,000	20,600,000	20,600,000	61,800,000
				5층~9층	10	37,944,278	175,055,722	213,000,000	10,000,000	11,300,000	21,300,000	21,300,000	21,300,000	21,300,000	21,300,000	21,300,000	63,900,000
				10층~20층	21	37,944,278	179,055,722	217,000,000	10,000,000	11,700,000	21,700,000	21,700,000	21,700,000	21,700,000	21,700,000	21,700,000	65,100,000
				21층~22층	2	37,944,278	183,055,722	221,000,000	10,000,000	1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66,300,000
77.9466A	77A	108동1,4호 110동1,4호 112동1,4호 114동1,4호	172	1층	8	49,471,420	198,528,580	248,000,000	10,000,000	14,800,000	24,800,000	24,800,000	24,800,000	24,800,000	24,800,000	24,800,000	74,400,000
				2층	8	49,471,420	203,528,580	253,000,000	10,000,000	15,300,000	25,300,000	25,300,000	25,300,000	25,300,000	25,300,000	25,300,000	75,900,000
				3층~4층	16	49,471,420	209,528,580	259,000,000	10,000,000	1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77,700,000
				5층~9층	40	49,471,420	217,528,580	267,000,000	10,000,000	16,700,000	26,700,000	26,700,000	26,700,000	26,700,000	26,700,000	26,700,000	80,100,000
77.8399B	77B	101동2,3호 114동2,3호	92	1층	4	49,403,683	195,596,317	245,000,000	10,000,000	14,500,000	24,500,000	24,500,000	24,500,000	24,500,000	24,500,000	24,500,000	73,500,000
				2층	4	49,403,683	200,596,317	250,000,000	10,000,000	15,000,000	25,000,000	25,000,000	25,000,000	25,000,000	25,000,000	25,000,000	75,000,000
				3층~4층	8	49,403,683	206,596,317	256,000,000	10,000,000	15,600,000	25,600,000	25,600,000	25,600,000	25,600,000	25,600,000	25,600,000	76,800,000
				5층~9층	20	49,403,683	214,596,317	264,000,000	10,000,000	1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79,200,000
				10층~20층	44	49,403,683	219,596,317	269,000,000	10,000,000	16,900,000	26,900,000	26,900,000	26,900,000	26,900,000	26,900,000	26,900,000	80,700,000
				21층~24층	12	49,403,683	225,596,317	275,000,000	10,000,000	17,5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82,500,000
84.7715A	84A	103동1,2호 104동1,2호 105동1,2호 106동1,2호 107동1,2호	234	1층	4	53,803,072	208,196,928	262,000,000	10,000,000	16,200,000	26,200,000	26,200,000	26,200,000	26,200,000	26,200,000	26,200,000	78,600,000
				2층	10	53,803,072	214,196,928	268,000,000	10,000,000	1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80,400,000
				3층~4층	20	53,803,072	220,196,928	274,000,000	10,000,000	1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82,200,000
				5층~9층	50	53,803,072	229,196,928	283,000,000	10,000,000	1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84,900,000
				10층~20층	110	53,803,072	235,196,928	289,000,000	10,000,000	1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86,700,000
				21층~24층	40	53,803,072	240,196,928	294,000,000	10,000,000	1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88,200,000
84.6120B	84B	102동3호 104동3,4호 106동3,4호 108동2,3호 110동2,3호 112동2,3호	250	1층	11	53,701,840	205,298,160	259,000,000	10,000,000	1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77,700,000
				2층	11	53,701,840	211,298,160	265,000,000	10,000,000	1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79,500,000
				3층~4층	22	53,701,840	217,298,160	271,000,000	10,000,000	1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81,300,000
				5층~9층	55	53,701,840	226,298,160	280,000,000	10,000,000	1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84,000,000
				10층~20층	121	53,701,840	232,298,160	286,000,000	10,000,000	1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85,800,000
				21층~24층	30	53,701,840	237,298,160	291,000,000	10,000,000	1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87,300,000
84.6033C	84C	102동4호	24	1층	1	53,696,400	205,303,600	259,000,000	10,000,000	1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77,700,000
				2층	1	53,696,400	211,303,600	265,000,000	10,000,000	1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79,500,000
				3층~4층	2	53,696,400	217,303,600	271,000,000	10,000,000	1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81,300,000
				5층~9층	5	53,696,400	226,303,600	280,000,000	10,000,000	1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84,000,000
				10층~20층	11	53,696,400	232,303,600	286,000,000	10,000,000	1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85,800,000
				21층~24층	4	53,696,400	237,303,600	291,000,000	10,000,000	1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87,300,000
84.7520D	84D	104동5호 106동5호	41	1층	2	53,790,698	208,209,302	262,000,000	10,000,000	16,200,000	26,200,000	26,200,000	26,200,000	26,200,000	26,200,000	26,200,000	78,600,000
				2층	2	53,790,698	214,209,302	268,000,000	10,000,000	1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80,400,000
				3층~4층	4	53,790,698	220,209,302	274,000,000	10,000,000	1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82,200,000
				5층~9층	10	53,790,698	229,209,302	283,000,000	10,000,000	1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84,900,000
				10층~20층	22	53,790,698	235,209,302	289,000,000	10,000,000	1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86,700,000
				21층	1	53,790,698	240,209,302	294,000,000	10,000,000	1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88,200,000

※ 공통사항

- 2009. 4. 1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 표시 안내

(단위 : ㎡)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59.9773A	59.7846B	77.9466A	77.8399B	84.7715A	84.6120B	84.6033C	84.7520D
약식표기	59A	59B	77A	77B	84A	84B	84C	84D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세대별로 공급금액이 상이하오니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임.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선납할인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2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기관추천(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한정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 존 · 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 | | | 10층~20층 | 84 | 49,471,420 | 222,528,580 | 272,000,000 | 10,000,000 | 17,200,000 | 27,200,000 | 27,200,000 | 27,200,000 | 27,200,000 | 27,200,000 | 27,200,000 | 81,600,000 |
| | | | | 21층~24층 | 16 | 49,471,420 | 228,528,580 | 278,000,000 | 10,000,000 | 17,800,000 | 27,800,000 | 27,800,000 | 27,800,000 | 27,800,000 | 27,800,000 | 27,800,000 | 83,400,000 |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금액(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금액(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지역별 예치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면적에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

구 분	양산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16년 5월 20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2[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따라 해당구간의 금액이 있으면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함.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 · 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 · 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 · 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 · 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40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41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 대상자는 각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 세대)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계
59A	18	18	18	5	59
59B	4	4	4	1	13
77A	17	17	17	5	56
77B	9	9	9	3	30
84A	23	23	23	7	76
84B	25	25	25	7	82
84C	2	2	2	1	7
84D	4	4	4	1	13
합계	102	102	102	30	336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 필요없음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 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박사학위 취득 영구 귀국자, 우수선수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 · 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추첨 대상은 해당기관에서 추천 받은 자 전체임.
    추첨시 우선 해당 관계기관별 인원 배정 추첨을 선행하고, 배정된 추첨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는 관계기관은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배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 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 점 요 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 자녀(임신중에 있는 태아,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 영유아(태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한부모가족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 경과된 자
		3세대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무주택기간(4)	20	신청자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